

교육급여 예산 이체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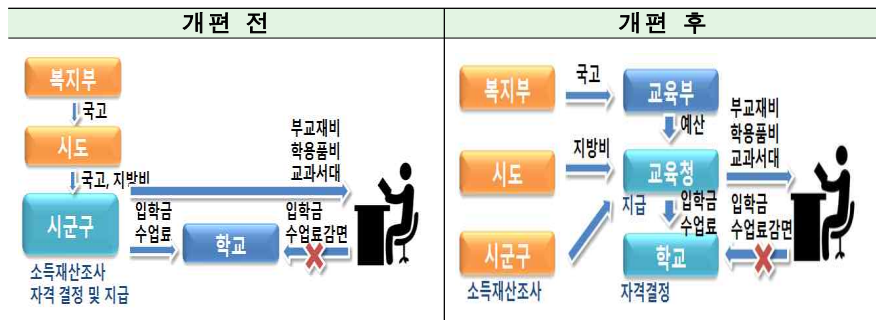
□ 예산 이체 근거 [기초생활보장법 제 19조, 제43조의 2]

-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시·도교육감임
- 시·도, 시·군·구는 모든 수급자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와 중위소득 40%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를 해당 지역의 보장비용 부담 비율(기초법 제43조)에 따라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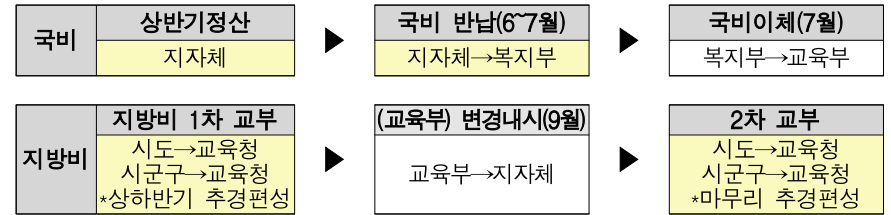
기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	부양의무자 있음	시도교육청	국가, 시도, 시군구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국가, 시도, 시군구	

□ 교육급여 예산 흐름

- 국가, 시·도, 시·군·구의 예산 부담분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체
 - 교육청에서 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 2015년 예산 이체 방법



○ 국비 이체

- ① (6.21, 복지부→지자체) 교육급여 정산 요청 공문 발송
- ② (6.29, 교육부→지자체) 교육급여 지방비 교부 요청 공문 발송
- ③ (6.30, 지자체→복지부) 상반기 교육급여 정산 완료
- ④ (7.1, 복지부→지자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공문발송 및 국비 반납 고지서 발부

* 시도는 시군구에서 6월 급여 지급 후 남은 교육급여 국비에 대한 정산과 빠른 반납을 위해 미리 공지할 필요

- ⑤ (7.10, 지자체→복지부) 국비 반납 완료

○ 지방비 이체(교부)

- ① (5월 말, 복지부) 지자체에 교육급여 예산 교육청 교부 준비 요청 공문 발송
- ② (6월, 지자체) 추경 시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시기 제출*

* 복지부 취합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③ (7월, 지자체) 시도, 시군구 지방비 교육청으로 교부

- 국비 매칭 지방비(1년 치) 잔액 전액 교부*

- 7.1일까지 시도, 시군구별 교부계획(일정, 금액) 제출

* 시·도 → 교육청, 시·군·구 → 교육청

* 추경 시 교육기관에 대한보조(308-08) 예산으로 세목 변경 후 교부(5.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정자치부)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국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5.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④ (9월, 교육부→지자체) 변경내시 공문발송
- ⑤ (9월~12월, 지자체→교육청) 후 2차 교부 완료
- ⑥ (10월, 교육부→지자체) 차년도 교육급여 교육부 가내시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시도·시군구 별 연간 보조금 예산 산출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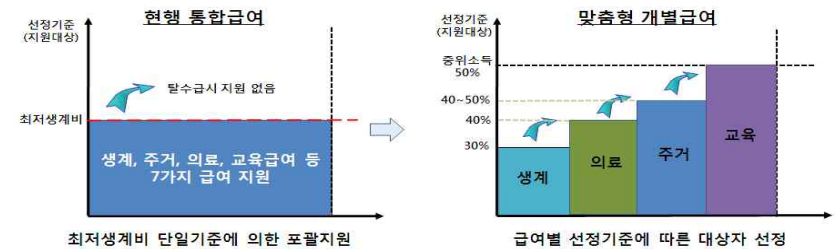
-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 초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x 38,700 x 보조비율*
 - 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x (38,700+52,600) x 보조비율
 -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x (52,600+129,500) x 보조비율
 - 고등학생 의료급여** 수급자 수 x 1,335,400 x 보조비율
- * 보조비율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타 급여의 예산부담비율에 준하여 반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인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

참고

교육급여 맞춤형 개편 기본계획

1 배경 및 경과

- **국정과제(43. 맞춤형 급여체제)** 이행을 위해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을 통합급여에서 개별 급여체제로 개편 확정**(사회보장위원회, '13.9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12월)에 따라 '15년 7월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복지부→교육부) 및 보장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 이관

2 개편 주요 내용

□ **지급기준 조정 및 지급대상 확대**

- 소득개념을 현재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
 -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5%) 이하로 **상향 조정**
 - 소득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부모 소득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급여 지급
 - 타 복지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 수가** 현재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지급기준 상향 : 10만명,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40만명)

□ **재원 구조 변경** : 국가, 지자체 ⇒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사·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 제2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 및 (3-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 법 제12조의 2(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의 지급은 시도교육청이 담당
-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50% 이하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
- (3-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늘어난 입학금·수업료 제외)

